장기요양보험 주요부당사례

2017. 11



Ι

입소시설 부당 사례

1, 수가가감산 위반

■ 인력배치기준 위반

관련근거

□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3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시설별 ●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

▶ 직원의 배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1항 별표 4)

(2016.12.31.이전)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 를 포함한 다) 또는 촉탁의 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 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 자 50명 이상)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 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입소 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의 수	필요 수
노인요 양시설	입소 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필요수	
노인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2017.1.1.이후)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 의사를 <u>포함한다</u> 또는 촉탁의 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 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 당 1명	1명 (입소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치매 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 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이 상인 경우로 한정함)
노인 요양 시설	입소 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노인공동 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차마전담형은 2명당 1명)					

□ 장기요양기관 시설별 •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급여비용 감액산정

부당사례 (1)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1명이 '14.5월~'14.11월까지 총 7개월 동안 실제 요양보호사로써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요양보호사로써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급여비용 청구

부당사례 (2)

○○요양시설은 종사자 1명이 '14.5월~'14.12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주방에서만 근무하였으며 요양보호사로서는 주1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근무만 하였으나 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급여비용청구

부당사례 (3)

○○요양시설은 물리치료사 2명이 각각 '13.9월~'14.7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14.8월~'15.8월까지 총 13개월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등록하여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

부당사례 (4)

○○요양시설은 작업치료사 1명이 '14.4월~'15.1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조기퇴근하여, 월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정상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

■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직원배치기준 외에 인력을 직종별로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급여비용 가산을 청구하여야 함

부당사례 (1)

○○요양시설은 '14.6월에 간호조무사 3명이, '14.8월에 간호조무사 1명이 각각 1인의 근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

부당사례 (2)

○○요양시설은 간호사 1명이 '14.1월~6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실제 160시간 미만 근무하여 간호사 1명을 배치하지 않았음에도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간호사 배치 가산 비용을 청구

■ 정원초과기준 위반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입소자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함

부당사례(1)

○○요양시설은 등급외자 1명에 대해 '15.3월 총 1개월 동안 해당 요양원에 입소하였으나 입소신고를 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급여비용 감액 없이 청구

부당사례(2)

○○요양시설은 등급외자 1명을 '13.9월~'14.7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입소현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입소자 4명은 입소일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정원을 초과 운영하였음에도 급여비용 감액없이 청구

■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

부당사례 (1)

○○요양시설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11. 10월 19일 정원이 변경되었음에도 '12.7월~'12.11월의 총 5개월 동안, '13.3월~'13.4월까지 총 2개월 동안 변경된 정원(현원)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음

부당사례 (2)

○○요양시설은 등급외자 1명이 2014년 3월7일자로 3등급 수급자가 됨으로서 현원이 10명인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여야하나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미가입기간('14.3월7일~'14.7월31일)에 따라 감산 청구하여야 함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100% 수가로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요양시설 인력 등록 후 병설기관(병원)과 업무 겸임

관련근거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시설별 ·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

부당사례

○ ○ 요양시설은 '14.8월~'16.1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요양보호사 3명이 동일대표, 동일부지 2, 3, 4층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일부 혹은 전부 근무하였음에도 요양 시설의 종사자로 등록하고,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 겸직기준 위반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가산이 적용되는 직원이 겸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당사례

○ ○ 요양시설은 간호조무사 1명이 '14.2월~'14.5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주·야간보호 및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로 겸직을 하고 있었음에도 간호조무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 받고 급여비용을 청구

2 사정기준 위반

■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입원 등의 사유로 외박한 경우에는 수가의 50%를 산정하고, 외박 1회당 10일 이내로 월 15일까지만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

부당사례

○○요양시설의 수급자 1명은 '14.7월~'15.2월 중 총 44회에 걸쳐 외박하였으나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급여비용을 청구

3 회위청구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증일 청구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근거하여, 시설급여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 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

부당사례(1)

○○요양원의 수급자 1명은 대표자의 모친으로 '15.3월~'15.4월까지 총 2개월 동안 실제 동일 건물 1층(○○주간보호센터)의무실에서 생활 및 숙박하여, 상기기관에 입소한 사실이 없으나 사실과 다르게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작성한 후 급여비용 청구

재가기관 부당 사례

1 허위청구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증일 청구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2항 및 제38조 제1항,「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에 근거하여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부당사례(1)

○○재가기관은 수급자 1명에게 '14.1월~'15.6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실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 대가로 수급자 가족에게 매월 30~40만원씩 비용을 지급하고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여 급여비용을 청구

부당사례(2)

○○재가기관은 수급자 3명에게 '15.2월~15.6월까지 총 5개월 동안 매주 3회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요일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

부당사례(3)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2명에게 '13.6월~'14.2월까지 총 9개월 동안 토요일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요통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

2 사정기준 위반

■ 주야간보호기관 기준 위반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근거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소시설 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부당사례

○○재가기관은 수급자 3명에게 '14.1월~'15.6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숙박을 제공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청구

■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기준 위반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을위하여 반드시 요양보호사 2명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

부당사례

○○재가기관은 수급자 2명에게 '12.9월~'15.8월까지 총 36개월 동안 실제 요양보호사 1인이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

■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실제 서비스 제공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

부당사례

○○재가기관은 수급자 3명이 '12.5월~'15.2월까지 총 34개월 동안 동일 건물의 요양시설에서 입소하여 생활하였으나, 단기보호에서 생활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 가족인 요양보호사 직업에 종사하면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수급자의 <u>가족인 요양보호사가일정한 직업</u>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 일정한 직업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며, 다만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부당사례

○○재가기관은 요양보호사 4명이 '14.1월~9월까지 총 9개월동안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에 종사하면서도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실제 서비스제공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

부당사례

○○재가기관은 수급자 1명에게 '14.7월~10월까지 총 4개월 동안 가족요양 보호사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타 요양보호사 2명이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

3 수가가감산 위반

■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

부당사례

○○재가기관은 요양보호사 17명이 '13.8월~'15.3월까지 총 20개월 동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급자 26명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

■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 위반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산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는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제공시간 중에 매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요양보호사의 적정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

부당사례

○○재가기관은 사회복지사 1명이 '14.8월~'14.12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수급자 9명에게 사회복지사나 관리책임자가 수급자를 방문상담하지 않았음에도 사회복지사가 수급자를 방문하여 상담한 것처럼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사회복지사 가산비용을 청구

4 기타

■ 무자격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 등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

부당사례

○○재가기관은 '14.12월~'15.11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인력 1명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격이 있는 타 요양보호사 명의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위반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부당사례

○○재가기관은 '15.5월~'15.10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수급자 6명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않고, 수급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기관통장에 매월 입금하는 방법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부당사례

○○재가기관은 '15.5월~'15.10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수급자 4명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였고, 수급자 1명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정액으로 매월 3만원씩 수납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 비밀누설 금지 위반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2조,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받는 자 또한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벌칙조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5호 :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사례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인근의 다수 (○○○○재가기관 등 9개소) 재가기관에서 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복지용구를 제공함